

#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nbb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9.  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사유

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범위와 이용자중 감면 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 결정(안 제10조제3항)
- 나. 이용자의 감면 대상자 범위(안 제10조제5항)
- 다.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(안 제21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행정자치부 1·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(2002.3.7)
-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## 4. 본문 : 덧붙임

##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” 를 “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” 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
2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1조제1항 중 “분기1회” 를 “월1회” 로 한다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

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(제10조제3항 관련)

- 1. 시설사용료 : 무료
- 2. 수강료

구 분	수 강 시 간(월)	수 강 료(월)	비 고
수 강 료	15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	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
	20시간 이하	20,000원 이하	
	25시간 이하	25,000원 이하	
	30시간 이하	30,000원 이하	
	30시간 이상	35,000원 이하	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~②(생략).</p> <p>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<u>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</u> 내에서 “사용료”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, “수강료”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 <p>⑤<u>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</u></p> <p>제21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등) ①~②(현행과같음).</p> <p>③-----  <u>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</u>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p> <p>④(현행과같음)</p> <p>⑤<u>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</u></li> <li>2. <u>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li> </ol> <p>제21조(회의) ①-----          -----<u>월1회</u>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